# - Al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시업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 (신뢰성 평가 인증 지원 **상시 모집공고**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1 공고 개요

1.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2. 지원내용

- 기술 고도화 지원 : AI융합 지능형 농업에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생산, 물류,

유통 등)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원규모

가. 총 지원규모 : 총 2개社 내외 지원

분야	세부지원명	세부지원명 지원 금액	
기술 고도화	지리사 터키 이즈 키이	기어다 아 <b>베메이</b> 시네	0-1)=L 1](o)
지원	신뢰성 평가 인증 지원	기업당 9 <b>백만원</b> 이내	2개社 내외

- ※「신뢰성 평가 인증 지원」사후 지원, 신뢰성 평가 인증 완료 후 지원 가능
- ※「신뢰성 평가 인증 지원」은 잔여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

## 2 세부 지원내용

1. 사업목적 : AI융합 지능형 농업 관련 기술 확보/확산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가. (신뢰성평가 인증) 지능형 농업에 활용 가능한 AI기술 신뢰성 평가 비용 지원

※ SW품질평가, 데이터품질평가, 시험평가인증(KC, 안정성 등), AI신뢰성인증 등

※ 2025년 내 취득한 신뢰성 평가에 한하여 지원

#### 4. 신청대상

- 가.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광주광역시 내 기업(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소재)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 1인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제외대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 나. 신청 제외대상

- 1. 제출서류 미비한 또는 요건 미충족에 해당하는 기업
- 2.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3. 부정수급 등 보조금법 위반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4.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단, 최초신청일 기준 창업·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 대상에서 제외
- 5.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
- 6.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7. 최초신청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경우

#### 5. 사업비지급 및 편성

- 가. (사업비 지급) 「신뢰성 평가 인증」 선정 이후 일괄지급
- 나. (사업비 편성)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첨] 참조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다. 사업비 예산 편성 기준

비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지원사업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신뢰성평가	신뢰성 평가 인증은 ' <u>일반수용비</u> ' 만 편성가능

※ 상세 내용 [별첨] 참조 참고 및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양식 참고

# 6. 추진절차

구분	내용	비고	
사업공고	• 공고 일자 : 2025. 7. 2.(수) ~ (상시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 홈페이지	
<u> </u>			
	• 공고 및 접수 일정 : 상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접수	
	※ 매월말 당월 모집건 평가		
<u> </u>			
	• 사업 신청서류 제출 기업별 별도 통보(평가일정 등)		
선정평가	• 평가형식 : 적합성 검토, 서류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검토	
	* 서류평가(서면평가)로 진행함		
û			
최종선정	● 최종 지원과제 선정	선정 결과 알림	
Û			
협약	● 협약체결(사업운영기관 ↔ 지원대상 기업)	협약(오프라인)	
û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사업운영기관	
<u> </u>			
사후관리	• 성과 및 실적 조사 * 신뢰성평가 인증 지원은 최종평가 없음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정산	

# 평가 방법

## 1. 평가절차

신청서류 기반 사전검토 후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 (제출서류 누락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적합성검토		선정평가(평가위원회)	사업비 심의·조정
(서류검토)	•	서류평가	(사업비검토위원회)

#### 2. 적합성 검토

서류 검토, 서류 미비 및 요건 미 충족 시 평가 대상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참 여제한 조건 해당 여부 검토 (부정당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등)

3. 평가위원회 : 사업 분야별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이해관계자 제외)

#### 4. 평가방법 : 서류평가

- 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기업을 우선 지원함
- 나. 협약 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를 지원함 다. 일자리 창출 필수 및 가점 부여

사업 구분	일자리 창출 필수	가점 부여
신뢰성 평가 인증	해당없음	채용시
건되경 경기 원 <del>공</del>	에 O 따름	1명당 0.5점 부여, 최대 2점

- ※ 일자리 창출 기준 : 근속기간 3개월 이상, 참여율 10% 이상(협약일 ~ 2025. 12. 31.)
- ※ 일자리 창출 발생일 기준은 본 사업「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협약일기준으로 산정 (협약일 ~ 2025. 12. 31.)
-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였으나 미창출 되었을 경우, 추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관련 공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5. 평가항목 및 기준

### 가. 「신뢰성평가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점)	
예산 및	- 재무구조·경영상태 등 재무제표 평가	10	
회계점검(10)	- (IP지재권 및 기술컨설팅) 예산 편성의 타당성	10	
사업필요성(20)	- 지원 필요성, 목적의 명확성, 지원 결과물 구체성 등	20	
Л н ⊒ ± 6(20)	- 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필요성 및 시급성	20	
	- 기술 완성도 및 유사기술 대비 경쟁력 및 차별성		
기술평가(30)	- 기술 지능형 농업 적용 범위 및 가능성	30	
	- 기술 개발·적용을 통한 농업 연계 방안		
하요저저서(20)	- 지원 받은 기술 사업 활용 및 사업화 제시	20	
활용적정성(30)	-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제시	30	
성장가능성(10)	- 기업 성장 가능성 및 해당 지원 사업 효과 등	10	
일자리 창출(2)	- 서류 일자리 창출 계획	2	
크게니 6월(4)	(서류 평가시 가점항목으로 적용)		
합계	-	102	

# 신청 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 : 상시접수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3. 신청서류

번호	제출서류 목록	비고
1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서식
2	참여기관 참여확약서	별지 서식
3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별지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5	청렴서약서	별지 서식
6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지 서식
7	기업확인·인증서(예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홈택스 및 정부24
9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
10	재무제표(3년 이내)	정부24 등
11	기술 및 제품 보유 실적	자유 양식
12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 서류	NTIS
13	과제신청 기본사항	별지 서식
14	신뢰성평가 인증 사업 평가에 필요한 각종서류	1. 인증서 2. 견적서 3. 거래명세서 4. 공급기업통장사본 5. 세금계산서 6. 거래확인증 (입금내역 등 포함) 등 필요서류 일체

### 4. 문의처 및 접수처

- 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본부 AI융합팀 (문의 및 접수처) 062-610-2436, jyun522@gicon.or.kr
- ※ 메일 접수 시 제목: [기업명]사업명\_세부사업 (ex: [㈜GICON]\_신뢰성평가 인증)
- ※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 및 평가, 지원내용 등 상담 지원
- ※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11:30 ~ 13:00 제외)

#### 1. 사업일반

- 가. 사업 성과(사업화 성공 여부, 매출액, 특허, 논문,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등) 제고를 위한 기업간담회, 만족도 조사, 중앙기관 우수기술 전시회 등에 협조해야 함
-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 홍보 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

#### 2.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 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데이터를 취급, 관리, 활용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작성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나. 본 사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다.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時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라. 선정기업은 필요시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마. 사업 수시・중간・최종점검 時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바.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법규 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었을 경우 보 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아.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內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 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時 사업결과서 內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 자. 개인정보보호법규정 위반 時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 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차.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AX랩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평가) 감점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6 제제사항

### 1. 부정수급 관련 제재

- 가.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 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 1.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본 사업을 통해 중복 청구
  - 2.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
  -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 4. 기타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나.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 재가 확정된 경우,
  - 사업 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 사안에 따라 사법당 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 다.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

- 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별도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음
- 마.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바. 사업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운영기관으로 상시 신고 접수 필요

### 2. 제재부가금 및 사업제한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o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참여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 ㅇ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ㅇ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o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 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ㅇ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ㅇ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천만원 이하	50%	3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천5백만원
5천만원~1억원	2천5백만원+5천만원 초과 100%	7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천5백만원 (2천5백만원 + 2천만원(5천만원 초과액))
1억원~3억원	7천5백만원+1억원초과 150%	2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백만원 (7천5백만원+1.5억원(1억원 초과 1.5배)) 3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백만원 (7천5백만원+3억원(1억원 초과 2억원의 1.5배))

## < 사업참여제한 기준(예시) >

구분	제한사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3년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 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2년	
지원기업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3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년	

<sup>\*</sup> 상기 제재부가금 및 사업 참여제한 예시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